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5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 2.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 가. 기본요금(부과기준 0.75<sup>m</sup>까지) 22,500원에서 24,000원으로 변경
- 나. 초과요금(부과기준 0.1<sup>m</sup>당) 1,892원에서 2,310원으로 변경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나.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가. 기본요금(부과기준 0.75㎥까지) 22,500원에서 24,000원으로 변경

나. 초과요금(부과기준 0.1㎥당) 1,892원에서 2,310원으로 변경

### 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내역

구 분		현 행	인상 후 2025. 4(예정)	25년 인상률
분뇨(18L)		230원	230원	-
정 화 조	기본(0.75㎥)	22,500원	24,000원	1,500원 ↑ (6.7%)
	초과(0.1㎥)	1,892원	2,310원	418원 ↑ (22.1%)
	지하할증	7.0%	7.0%	-

라. 수수료 인상시 주민부담 금액

주거형태	기준 청소량	현행 청소비	인상후 청소비	세대당 연간 부담증가액
단독주택 (10인용)	1m <sup>3</sup>	27,230원	30,200원	2,970원 증가
다세대주택 (10세대-30인용)	3m <sup>3</sup>	65,070원	78,200원	1,313원 증가
도시형생활주택 (60세대-200인용)	20m <sup>3</sup>	386,710원	468,675원	1,366원 증가
공장 또는 아파트 (700세대-3,000인용)	300m <sup>3</sup>	56,768,310	69,306,675	17,912원 증가

마. 분뇨수집 · 운반업체 현황

구 분		고려정화(주)	신흥정화(주)
소재지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2409호	독산로 108-1 2층
대행기간		2024.04.01.~2027.03.31	2024.04.01.~2027.03.31
허가일자		1979. 4. 1	2002. 5. 2
차고지		강서구 개화동 568-2	강서구 방화동 79-1
대행구역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독산1동(두산로 기준 좌측) (4개동)	시흥1~5동, 독산2동, 독산1동(두산로 기준 우측) (6개동)
인력및 장 비	장비 (차량)	20kL 이상 : 5대, 8kL 이상 : 2대 5kL 이상 : 1대, 총139.2kL	20kL 이상 : 4대, 8kL : 3대, 총117.3kL
	직원수	사무직 6명, 현장직 9명, 총 15명	사무직 4명, 청소 미화원 8명, 총 12명

바. 검토의견

- 안 별표 1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025년 4월부터 인상하고자 함.

※서울 타 자치구 개정 현황 (단위 : 원)

자치구	서울시 인상(안)		인상 전 → 인상 후(인상률)		시행일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영등포구	30,100	2,620	22,500 → 23,800 (5.78%)	1,960 → 2,240 (14.29%)	2025. 1. 1.
노원구		2,740	22,500 → 26,300 (16.89%)	2,050 → 2,590 (26.34%)	2024. 8. 1.
도봉구		2,830	22,500 → 26,100 (16%)	2,116 → 2,454 (15.97%)	2024. 11. 1.
송파구		2,440	22,500 (동결)	1,830 → 2,130 (16.39%)	2024. 7. 6.
구로구		2,400	22,500 → 24,000 (6.70%)	1,800 → 2,300 (27.78%)	2024. 7. 1.
종로구		2,180	22,500 (동결)	1,550 → 2,200 (41.90%)	2024. 1. 1.
양천구		2,350	19,800 → 22,500 (13.60%)	1,550 → 1,890 (21.90%)	2023. 12. 14
동대문구		2,600	22,500 → 24,500 (8.88%)	1,950 → 2,350 (20.51%)	2023. 11. 1.
서대문구		2,000	22,500 (동결)	1,500 → 2,090 (39.30%)	2023. 7. 1.
인상액 평균(인상률)			1,656원(7.54%)	472원(24.93%)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분뇨 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코로나 이후 더욱 힘들어진 생활 여건과 주민 기본생활비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